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1. 중복성의 판단요소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연구주체간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의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또는 타부처)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국과연은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 수립 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계획 수립 시 그 후속조치를 판단하여야 한다.